

 신안산대학교	다문화가족학생 지원 규정	규정 번호	2-5-22
		제정 일자	2022. 8. 11.
		개정 일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입학학생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다문화가족학생이라 함은 “다문화가족지원법” 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대학의 지원) ① 다문화가족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지원을 위하여 입학학생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1. 다문화가족학생의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
 2. 다문화가족 학생의 과목수강 및 학업지원에 관한 사항
 3. 다문화가족학생의 복지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
 4. 다문화가족학생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 5. 다문화가족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 6. 교내 다문화가족학생 차별 피해사례 신고 접수 및 조치에 관한 사항
 7. 기타 다문화가족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- ② 다문화가족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및 학과의 협조를 받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.

제4조(장학금 지급) 다문화가족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